<전 매체> 2022년 4월 28일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 **보도참고자료**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• 문의 : 상생협력지원과 박순홍 과장(044-204-7930), 김원주 사무관(7936)

중기부, 현대차·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

□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위해,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중고차 사업은 **1년 연기하여 내년 5월부터 개시**

□ 이후에도 중소사업자의 충격완화를 위해 **인증중고차 판매물량은 단계적으로 확대**하고, **매집물량의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사업자가 확보**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권칠승, 이하 중기부)는 **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중고차판매업 진출**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4월 28일(목) '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'(이하 심의회)를 개최하여 **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**했다고 밝혔다.

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**당사자간 자율조정(2차례)**과 **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(4차례)**를 개최하여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**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**하였다.

이전에도 현대차·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'19.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.

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**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"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"** 결과를 보고받고, **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**한 후,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**권고안을 도출·의결**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.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**격론**이 이어져 **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**되었다.

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**권고안의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중고차판매업 **사업개시 시점을 1년**('22.5.1~'23.4.30) **연기**한다. 다만, **'23년 1월~4월** 동안 각각 **5천대** 내에서 인증중고차 **시범판매**가 허용된다.

둘째,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중고차 **판매대수를 2년간** 아래와 같이 **제한한다.**

구 분	'22.5.1~'23.4.30	'23.5.1~'24.4.30	'24.5.1~'25.4.30
현대자동차(주)	-	2.9%	4.1%
기아(주)	-	2.1%	2.9%

판매대수 **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**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**직전 년도 총거래대수**(사업자거래(알선이전+매도이전)+당사자거래)와 **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**으로 한다.

셋째,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는 **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** 매입한다.

넷째,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**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**하여야 한다.

이때 **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**하거나 현대차(주)·기아(주)가 **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**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**50% 이상**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에 대한 이번 **사업조정 권고는 3년('22.5.1 ~ '25.4.30)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, 이행명령, 벌칙 등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'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.**

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·개시·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.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

이내에서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을 연기하거나, 품목·시설·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지난 3월 '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'*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**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**해졌다.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**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,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.**

*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사업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으로 '13년과 '16년 두 차례 지정하여 총 6년간 보호하였고, 이 기간이 종료되자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

이를 반영하여 **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**는 **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**을 제시한 바 있다.

이에 앞서 **국회 을지로위원회**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하여 **연도별 단계적 진입방안*을 마련**하면서, 완성차 업계의 **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**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.

* 완성차업계 판매시장 점유율 상한 설정 : '22년 5% → '23년 7% → '24년 10%

이에 따라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**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절충선**을 찾는데 많은 고심**을** 기울였다.

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, **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, 전산 고도화** 등을 **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**를 가지게 되고, **중고차 매입물량 부족,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한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에게는 **내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**

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,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**내년 1월부터는** 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의 인증 중고차를 **구매**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"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'**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**'를 **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**을 찾기 위해 **위원들이 많은 고심**을 했다"고 밝히며,

현대자동차(주)와 기아(주)에 대해 "이번 중기부의 **사업조정 권고**를 **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"을** 요청했다.

또한, **중소기업계**에 대해서도 "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, **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**으로 삼아줄 것"을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김원주 사무관(☎ 044-204-79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